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52

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김위상・이달희・임이자

김선교 · 김승수 · 이인선

구자근 · 서범수 · 박정하

송석준 • 박충권 • 김용태

우재준 • 박성훈 • 이종배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정부·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.

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 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).

법률 제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45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의 제목 중 "전통시장 화재공제"를 "화재공제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전통시장의"를 "시장 및 상점가의"로, "전통시장 화재공제"를 "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공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전통시장"을 "시장 및 상점가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455호 전통시장 및 법률 제2045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 운 제24조의2(화재공제 운영 지원 영 지원 등) ① 정부는 전통시 등) ① -----시장 및 상점가 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 의-----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 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 -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공제--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 (2) -----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 장 및 상점가의-----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